

엘리프 애월 입주자모집공고



* 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 견본주택 운영안내

- 엘리프 애월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제주엘리프애월.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사항은 견본주택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예약제로 운영될 경우, 관람 예약은 홈페이지(<https://제주엘리프애월.com>)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방하시는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견본주택 관람 인원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으로 제한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는 관람을 제한하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장 시 견본주택에서 실시/제공하는 검역·방역 절차 및 위생 도구 착용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에 한하여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분양계약 체결 목적에 한해 견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엘리프 애월
견본주택 입장 제한사항 안내

- ①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②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 ③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견본주택 내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④ 기타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지침 위반시 견본주택 퇴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가능 여부,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방법 등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s://제주엘리프애월.com>) 운영으로 인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1533-2777)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프 애월 상담전화(☎1533-277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고,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과연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2조의4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일반공급 | |
|------|--|----------|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 등에 따라 주택형은 주거 전용면적만 표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 0 | 0 | 0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 0 | 0 | X | X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군 복무기간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지역 미거주 장기복무 군인의 해당지역 거주인정 및 청약 신청 가능 사항

| 구분 | 해당자격 |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전국 해당)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2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 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에 공개되며, 공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 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2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2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 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합니다.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 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전매제한 없음(「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3) |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은 무이자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및 자격 가능여부 등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개인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유의사항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 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확장세대 기준으로 전용 84G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 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이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 신고합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협조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시(30일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일반공급 |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 | 1순위 | 2순위 | | | |
| 일정 | 2022년 12월 05일(월) | 2022년 12월 06일(화) | 2022년 12월 12일(월) | 2022년 12월 13일(화) ~ 2022년 12월 22일(목) | 2023년 01월 02일(월) ~ 2023년 01월 06일(금) |
| 방법 (일시)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 | 견본주택 (10:00 ~ 16:00)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3-3 <p>* 서류심사 및 부적격 겸수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p>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속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74862호(2022.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우선합니다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4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 지상7층 4개동 공동주택 총 136세대
-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VII-0.156g임
- 입주예정일 : 2025년 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 표기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
| | | |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소계 | | | | | | |
| 민영 주택 | 2022000795 | 01 | 52.8491 | 52 | 52.8491 | 13.7974 | 66.6465 | 3.2290 | 19.7782 | 89.6537 | 29.9838 | 1 | 1 |
| | | 02 | 68.9479 | 68 | 68.9479 | 18.5304 | 87.4783 | 4.2126 | 25.8030 | 117.4939 | 39.1174 | 2 | 2 |
| | | 03 | 75.7099 | 75 | 75.7099 | 18.9084 | 94.6183 | 4.6258 | 28.3336 | 127.5777 | 42.9538 | 14 | 14 |
| | | 04 | 76.3603 | 76 | 76.3603 | 20.1358 | 96.4961 | 4.6655 | 28.5770 | 129.7386 | 43.3228 | 2 | 2 |
| | | 05 | 84.5242A | 84A | 84.5242 | 21.1059 | 105.6301 | 5.1644 | 31.6322 | 142.4267 | 47.9545 | 11 | 11 |
| | | 06 | 84.5242B | 84B | 84.5242 | 21.1059 | 105.6301 | 5.1644 | 31.6322 | 142.4267 | 47.9545 | 1 | 1 |
| | | 07 | 84.5242C | 84C | 84.5242 | 21.1059 | 105.6301 | 5.1644 | 31.6322 | 142.4267 | 47.9545 | 1 | 1 |
| | | 08 | 84.5242D | 84D | 84.5242 | 21.1059 | 105.6301 | 5.1644 | 31.6322 | 142.4267 | 47.9545 | 1 | 1 |
| | | 09 | 84.22238E | 84E | 84.2238 | 21.5276 | 105.7514 | 5.1460 | 31.5198 | 142.4172 | 47.7841 | 36 | 36 |
| | | 10 | 84.5261F | 84F | 84.5261 | 21.3047 | 105.8308 | 5.1646 | 31.6329 | 142.6283 | 47.9556 | 12 | 12 |
| | | 11 | 84.1207G | 84G | 84.1207 | 21.0693 | 105.1900 | 5.1398 | 31.4812 | 141.8110 | 47.7256 | 14 | 14 |
| | | 12 | 109.6966A | 109A | 109.6966 | 26.4715 | 136.1681 | 6.7024 | 41.0527 | 183.9232 | 62.2360 | 13 | 13 |
| | | 13 | 109.1614B | 109B | 109.1614 | 27.5372 | 136.6986 | 6.6698 | 40.8524 | 184.2208 | 61.9324 | 7 | 7 |
| | | 14 | 110.3672A | 110A | 110.3672 | 26.6112 | 136.9784 | 6.7434 | 41.3037 | 185.0255 | 62.6165 | 19 | 19 |
| | | 15 | 110.3672B | 110B | 110.3672 | 26.6112 | 136.9784 | 6.7434 | 41.3037 | 185.0255 | 62.6165 | 1 | 1 |
| | | 16 | 110.3672C | 110C | 110.3672 | 26.6112 | 136.9784 | 6.7434 | 41.3037 | 185.0255 | 62.6165 | 1 | 1 |
| 합계 | | | | | | | | | | | | 136 | 136 |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지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 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 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릿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엘리프 애월 견본주택(☎ 1533-2777)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기재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약식표기

(단위 : m²)

| | | | | | | | | | | | | | | | | |
|-------------------|---------|---------|---------|---------|--------------|--------------|--------------|--------------|--------------|--------------|--------------|---------------|---------------|---------------|---------------|---------------|
| 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 52.8491 | 68.9479 | 75.7099 | 76.3603 | 84.5242 A | 84.5242 B | 84.5242 C | 84.5242 D | 84.2238 E | 84.5261 F | 84.1207 G | 109.696 6A | 109.161 4B | 110.367 2A | 110.367 2B | 110.367 2C |
| 약식표기 주택형 | 52 | 68 | 75 | 76 | 84A | 84B | 84C | 84D | 84E | 84F | 84G | 109A | 109B | 110A | 110B | 110C |
| 주택건설사업승인서 상 표기 | 52 | 68 | 75 | 76 | 84A | 84A-1 | 84A-2 | 84A-3 | 84B | 84C | 84D | 109A | 109B | 110 | 110-1 | 110-2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부가세포함)

| 약식 표기 | 공급 세대 수 | 동호 구분 | 층구분 | 해당 세대 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 (10%) | | 증도금(60%) | | | | | | 잔금 (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회 | 2회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2023.04.14 | 2023.08.14 | 2023.12.14 | 2024.04.14 | 2024.08.14 | 2024.12.14 |
| 52 | 1 | 101동 2호 | 1층 | 1 | 72,549,000 | 310,500,000 | | 383,049,000 | 10,000,000 | 28,304,900 | 38,304,900 | 38,304,900 | 38,304,900 | 38,304,900 | 38,304,900 | 38,304,900 |
| 68 | 2 | 103동 1호 | 7층 | 1 | 102,619,000 | 439,192,000 | | 541,811,000 | 10,000,000 | 4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 | | 103동 2호 | 7층 | 1 | 102,619,000 | 439,192,000 | | 541,811,000 | 10,000,000 | 4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54,181,100 |

| | | | | | | | | | | | | | | | | | | |
|------|----|--|----------|----|-------------|-------------|-------------|-------------|-------------|------------|------------|------------|------------|------------|------------|------------|------------|-------------|
| 75 | 14 | 104동 3호 | 1층 | 1 | 101,481,000 | 434,321,000 | | 535,802,000 | 10,000,000 | 4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160,740,600 |
| | | | 2층 | 1 | 103,595,000 | 443,370,000 | | 546,965,000 | 10,000,000 | 4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164,089,500 |
| | | | 3,4,5,6층 | 4 | 105,709,000 | 452,418,000 | | 558,127,000 | 10,000,000 | 4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167,438,100 |
| | | | 7층 | 1 | 110,995,000 | 475,039,000 | | 586,034,000 | 10,000,000 | 4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175,810,200 |
| | | 104동 4호 | 1층 | 1 | 101,481,000 | 434,321,000 | | 535,802,000 | 10,000,000 | 4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53,580,200 | 160,740,600 |
| | | | 2층 | 1 | 103,595,000 | 443,370,000 | | 546,965,000 | 10,000,000 | 4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54,696,500 | 164,089,500 |
| | | | 3,4,5,6층 | 4 | 105,709,000 | 452,418,000 | | 558,127,000 | 10,000,000 | 4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55,812,700 | 167,438,100 |
| | | | 7층 | 1 | 110,995,000 | 475,039,000 | | 586,034,000 | 10,000,000 | 4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58,603,400 | 175,810,200 |
| | | | 103동 1호 | 6층 | 1 | 105,573,000 | 451,834,000 | | 557,407,000 | 10,000,000 | 4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167,222,100 |
| | | | 103동 2호 | 6층 | 1 | 105,573,000 | 451,834,000 | | 557,407,000 | 10,000,000 | 4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55,740,700 | 167,222,100 |
| 84A | 11 | 101동 3호 | 1층 | 1 | 111,723,000 | 478,154,000 | | 589,877,000 | 10,000,000 | 4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176,963,100 |
| | | | 2층 | 1 | 114,050,000 | 488,116,000 | | 602,166,000 | 10,000,000 | 5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180,649,800 |
| | | | 3,4,5,6층 | 4 | 116,378,000 | 498,078,000 | | 614,456,000 | 10,000,000 | 5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184,336,800 |
| | | 101동 4호 | 1층 | 1 | 111,723,000 | 478,154,000 | | 589,877,000 | 10,000,000 | 4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58,987,700 | 176,963,100 |
| | | | 2층 | 1 | 114,050,000 | 488,116,000 | | 602,166,000 | 10,000,000 | 5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60,216,600 | 180,649,800 |
| | | | 3,4,5층 | 3 | 116,378,000 | 498,078,000 | | 614,456,000 | 10,000,000 | 5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184,336,800 |
| 84B | 1 | 101동 3호 | 7층 | 1 | 122,197,000 | 522,981,000 | | 645,178,000 | 10,000,000 | 5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193,553,400 |
| 84C | 1 | 101동 4호 | 6층 | 1 | 116,378,000 | 498,078,000 | | 614,456,000 | 10,000,000 | 5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61,445,600 | 184,336,800 |
| 84D | 1 | 101동 4호 | 7층 | 1 | 122,197,000 | 522,981,000 | | 645,178,000 | 10,000,000 | 5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64,517,800 | 193,553,400 |
| 84E | 36 | 103동 1호 103동 2호 103동 3호 103동 4호 103동 5호 103동 6호 | 1층 | 5 | 111,851,000 | 478,704,000 | | 590,555,000 | 10,000,000 | 49,055,500 | 59,055,500 | 59,055,500 | 59,055,500 | 59,055,500 | 59,055,500 | 59,055,500 | 59,055,500 | 177,166,500 |
| | | | 2층 | 5 | 114,181,000 | 488,677,000 | | 602,858,000 | 10,000,000 | 50,285,800 | 60,285,800 | 60,285,800 | 60,285,800 | 60,285,800 | 60,285,800 | 60,285,800 | 60,285,800 | 180,857,400 |
| | | | 3,4,5,6층 | 22 | 116,512,000 | 498,650,000 | | 615,162,000 | 10,000,000 | 51,516,200 | 61,516,200 | 61,516,200 | 61,516,200 | 61,516,200 | 61,516,200 | 61,516,200 | 61,516,200 | 184,548,600 |
| | | | 7층 | 4 | 122,337,000 | 523,582,000 | | 645,919,000 | 10,000,000 | 54,591,900 | 64,591,900 | 64,591,900 | 64,591,900 | 64,591,900 | 64,591,900 | 64,591,900 | 64,591,900 | 193,775,700 |
| | | | 1층 | 1 | 111,935,000 | 479,063,000 | | 590,998,000 | 10,000,000 | 49,099,800 | 59,099,800 | 59,099,800 | 59,099,800 | 59,099,800 | 59,099,800 | 59,099,800 | 59,099,800 | 177,299,400 |
| 84F | 12 | 104동 1호 104동 2호 | 2층 | 1 | 114,267,000 | 489,043,000 | | 603,310,000 | 10,000,000 | 50,331,000 | 60,331,000 | 60,331,000 | 60,331,000 | 60,331,000 | 60,331,000 | 60,331,000 | 60,331,000 | 180,993,000 |
| | | | 3,4,5,6층 | 8 | 116,599,000 | 499,024,000 | | 615,623,000 | 10,000,000 | 51,562,300 | 61,562,300 | 61,562,300 | 61,562,300 | 61,562,300 | 61,562,300 | 61,562,300 | 61,562,300 | 184,686,900 |
| | | | 7층 | 2 | 122,429,000 | 523,975,000 | | 646,404,000 | 10,000,000 | 5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193,921,200 |
| | | | 1층 | 2 | 111,257,000 | 476,162,000 | | 587,419,000 | 10,000,000 | 48,741,900 | 58,741,900 | 58,741,900 | 58,741,900 | 58,741,900 | 58,741,900 | 58,741,900 | 58,741,900 | 176,225,700 |
| 84G | 14 | 104동 5호 104동 6호 | 2층 | 2 | 113,575,000 | 486,082,000 | | 599,657,000 | 10,000,000 | 49,965,700 | 59,965,700 | 59,965,700 | 59,965,700 | 59,965,700 | 59,965,700 | 59,965,700 | 59,965,700 | 179,897,100 |
| | | | 3,4,5,6층 | 8 | 115,893,000 | 496,002,000 | | 611,895,000 | 10,000,000 | 51,189,500 | 61,189,500 | 61,189,500 | 61,189,500 | 61,189,500 | 61,189,500 | 61,189,500 | 61,189,500 | 183,568,500 |
| | | | 7층 | 2 | 122,429,000 | 523,975,000 | | 646,404,000 | 10,000,000 | 5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64,640,400 | 193,921,200 |
| | | | 1층 | 1 | 140,053,000 | 599,402,000 | 59,940,000 | 799,395,000 | 10,000,000 | 69,939,500 | 79,939,500 | 79,939,500 | 79,939,500 | 79,939,500 | 79,939,500 | 79,939,500 | 79,939,500 | 239,818,500 |
| 109A | 13 | 101동 1호 101동 2호 | 2층 | 2 | 142,971,000 | 611,890,000 | 61,189,000 | 816,050,000 | 10,000,000 | 71,605,000 | 81,605,000 | 81,605,000 | 81,605,000 | 81,605,000 | 81,605,000 | 81,605,000 | 81,605,000 | 244,815,000 |
| | | | 3,4,5,6층 | 8 | 145,888,000 | 624,377,000 | 62,438,000 | 832,703,000 | 10,000,000 | 73,270,300 | 83,270,300 | 83,270,300 | 83,270,300 | 83,270,300 | 83,270,300 | 83,270,300 | 83,270,300 | 249,810,900 |
| | | | 7층 | 2 | 152,156,000 | 651,201,000 | 65,120,000 | 868,477,000 | 10,000,000 | 76,847,700 | 86,847,700 | 86,847,700 | 86,847,700 | 86,847,700 | 86,847,700 | 86,847,700 | 86,847,700 | 260,543,100 |
| | | | 1층 | 1 | 140,598,000 | 601,737,000 | 60,174,000 | 802,509,000 | 10,000,000 | 70,250,900 | 80,250,900 | 80,250,900 | 80,250,900 | 80,250,900 | 80,250,900 | 80,250,900 | 80,250,900 | 240,752,700 |
| | | | 2층 | 1 | 142,283,000 | 608,948,000 | 60,895,000 | 812,126,000 | 10,000,000 | 7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243,637,800 |
| 109B | 7 | 102동 1호 | 3,4,5,6층 | 4 | 145,187,000 | 621,375,000 | 62,138,000 | 828,700,000 | 10,000,000 | 7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248,610,000 |
| | | | 7층 | 1 | 152,446,000 | 652,444,000 | 65,244,000 | 870,134,000 | 10,000,000 | 7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261,040,200 |

| | | | | | | | | | | | | | | | | |
|------|----|-------------------------------|----------|----|-------------|-------------|------------|-------------|------------|------------|------------|------------|------------|------------|------------|-------------|
| 110A | 19 | 102동 2호 102동 3호 102동 4호 | 1총 | 3 | 139,379,000 | 596,520,000 | 59,652,000 | 795,551,000 | 10,000,000 | 69,555,100 | 79,555,100 | 79,555,100 | 79,555,100 | 79,555,100 | 79,555,100 | 238,665,300 |
| | | | 2총 | 3 | 142,283,000 | 608,948,000 | 60,895,000 | 812,126,000 | 10,000,000 | 7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81,212,600 | 243,637,800 |
| | | | 3,4,5,6총 | 11 | 145,187,000 | 621,375,000 | 62,138,000 | 828,700,000 | 10,000,000 | 7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248,610,000 |
| | | | 7총 | 2 | 152,446,000 | 652,444,000 | 65,244,000 | 870,134,000 | 10,000,000 | 7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261,040,200 |
| 110B | 1 | 102동 4호 | 6총 | 1 | 145,187,000 | 621,375,000 | 62,138,000 | 828,700,000 | 10,000,000 | 7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82,870,000 | 248,610,000 |
| 110C | 1 | 102동 4호 | 7총 | 1 | 152,446,000 | 652,444,000 | 65,244,000 | 870,134,000 | 10,000,000 | 7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87,013,400 | 261,040,200 |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2)으로 기재하니 공급면적(m^2) 또는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m^2 초과 주택형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 동, 층, 향, 일조, 조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택형별, 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세제공과금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무상이며,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비용이 미포함 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 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고 면적 계산상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단수 조정 방식 차이로 인하여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충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 검사일 이후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득하고 입주할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고, 10%금액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되, 이 경우의 구체적인 납부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정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기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연이자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 됨)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위탁자가 지정하는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시 지연이자 부과됨)
- 계약자는 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 취급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서류는 서류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되는 당첨자 효력 상실, 그에 따른 공급계약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사본 불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신청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 점검토록 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본 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주체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

| 신청자격요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1.2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2021.11.25.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1년 미만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 | |
|----------|-----|---|--|--|
| 구분 | 순위 | 신청구분 |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민영 주택 | 1순위 | 전용면적 $85m^2$ 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m^2$ 이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1. 해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이상 거주자 2. 기타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미만 거주자 |
| | | 전용면적 $85m^2$ 초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m^2$ 초과 : 추첨제 100%를 적용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 | 2순위 | 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

| | | | |
|----------------------------|--|---|------------------------------|
| | | 주택형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
| | | 구분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 | | 모든면적 | 500만원 |
|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 | | 300만원 | 250만원 |
| | | 600만원 | 400만원 |
| | | 1,000만원 | 700만원 |
| | | 1,500만원 | 1,000만원 |
| 유의사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추가 접수 불가).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적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예치금액이 같거나 적은 지역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①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잔액 충족 및 순위별 가입기간 경과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③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청약신청일까지 충족(단, 동일 주택 규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p>(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p> 중복 청약접수 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종합저축 및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 외의 지역(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1년), 청약 위축지역(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 접수는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분 | 내용 |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홈페이지(https://제주엘리프애월.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가 가능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 함.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일반공급 | 1순위 | 2022.12.05.(월)09: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홈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
| | 2순위 | 2022.12.06.(화)09:00~17:30 | |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 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 구비사항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일반 공급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입주대상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안내(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접수완료 하여야 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인 | |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
| | ○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 본인 |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배우자 |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
|--|---|-----------------|-------------|--|
| | | (전체)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사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업 종사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 | ○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
| ※ 계약 구비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는 접수 및 보관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일반 공급 (가점제, 예비입주 자) | | ○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 피부양 직계존속 |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3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1년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주소 변동사항(1년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발급 |
| |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상세”로 발급 |
| | |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 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기준최근1년이내계속하여90일을초과하여해외에체류여부확인 ■ 기록 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 | |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접수를 산정한 경우 |
| | | ○ |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 | | 위임장 | - |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 | ○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 | | 인감도장 | 청약자 |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생략 |
| | ○ | | 신분증 / 인장 | 대리인 | ■ 신분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공고일 이후에 청약신청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공고일 당시의 구비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서류 제출 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이후 폐기함.

I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12.12.(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01.02.(월) ~ 2023.01.06.(금) (10:00 ~ 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프애월 견본주택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3-3) |
|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당일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변경 시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의 서류검수,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은 향후 사업주체에서 개별 통보 예정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 |

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응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 2022.12.12.(월)~2022.12.21.(수) (10일간) | |
| 인터넷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p> | |
| 휴대폰 문자 서비스 | 대상 |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 제공일시 | 2022.12.12.(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전화(ARS)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를 통하여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안내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 | | |
| 본인 계약시 | O | |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용도에 "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분에 한함본인 계약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시 인감 도장을 서명으로 대체 가능 |
| | O | | 계약금입금증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 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
| | O | | 자격검증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 제출자는 제외) |
| | O | 추가 개별통지서류 | 본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자는 대리인 계약 불가 |
| | O | 신분증 / 인장 | 대리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 계약위임용 ※ 청약자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견본주택 비치) |
| | O | 위임장 | -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음.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음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함.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 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공급계약 기간 전)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 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 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됨)

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제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 제한됨.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제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입계좌 | 수협은행 | 1010-2236-6898 | 대한토지신탁(주)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하며,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각 회차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음.(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지정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은 효력이 상실, 해약 조치 됨. 이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는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및 추가 대출 금융기관을 알선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해당기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약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무이자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 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하며,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전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 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답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
- 사전점검 진행절차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전까지 별도 안내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일 : 2025년 05월 예정

-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1개월 전에는 실입주일(입주지정기간)을 각각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체 안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함.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규정에 의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V 추가 선택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에 관한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 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 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일부 선품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된 발코니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확장된 발코니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음.
- 확장된 발코니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는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확장된 발코니 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발코니 확장을 시공하는 세대의 경우,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유상 옵션 선택품목 안내

| 품목 | 주택형(타입) | 제조사 | 제품NO | 옵션 판매가 (부가세포함) |
|----------------------|---------|-------|---------------|-------------------|
| 현관중문(3연동) | 52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68 | 계룡OEM | 3연동 | 2,630,000 |
| | 75 | 계룡OEM | 3연동 | 2,630,000 |
| | 76 | 계룡OEM | 3연동 | 2,630,000 |
| | 84A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B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C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D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E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F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84G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109A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109B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110A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110B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 110C | 계룡OEM | 스윙도어 | 2,800,000 |
| 거실아트월 스타일업 (박판타일) | 52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820,000 |
| | 68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1,970,000 |
| | 75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700,000 |
| | 76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540,000 |
| | 84A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3,210,000 |
| | 84B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3,210,000 |
| | 84C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300,000 |
| | 84D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780,000 |
| | 84E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3,550,000 |

| | | | | |
|--|------|-------|------------------------|-----------|
| 거실바닥 스타일업 (타일) | 84F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3,210,000 |
| | 84G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3,100,000 |
| | 109A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840,000 |
| | 109B | 세종통상 | 이스타투아리오(색상기준) | 2,700,000 |
| | 110A | 세종통상 | 스타투리오판타스 티코(색상기준) | 3,550,000 |
| | 110B | 세종통상 | 스타투리오판타스 티코(색상기준) | 3,550,000 |
| | 110C | 세종통상 | 스타투리오판타스 티코(색상기준) | 3,550,000 |
| | 52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110,000 |
| | 68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840,000 |
| | 75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020,000 |
| | 76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120,000 |
| | 84A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20,000 |
| | 84B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20,000 |
| | 84C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130,000 |
| | 84D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230,000 |
| | 84E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40,000 |
| | 84F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20,000 |
| | 84G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50,000 |
| | 109A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720,000 |
| | 109B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370,000 |
| | 110A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490,000 |
| | 110B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490,000 |
| | 110C | 세종통상 | 타일(세종통상_66201(TCM)) | 1,490,000 |
| 주방스타일업 A <u>엔지니어드스톤</u> (벽/상판), 무선충전콘센트 | 52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6,770,000 |
| | 68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6,100,000 |
| | 75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6,900,000 |
| | 76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6,270,000 |
| | 84A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8,340,000 |
| | 84B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5,190,000 |
| | 84C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8,340,000 |
| | 84D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8,340,000 |
| | 84E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6,860,000 |
| | 84F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8,560,000 |

| | | | | |
|--|------------------|-------|---|-----------|
| | 84G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7,830,000 |
| | 109A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3,760,000 |
| | 109B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무선충전콘센트 | 3,700,000 |
| 주방스타일업 B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 무선충전콘센트, 수납장, 독립형후드 | 110A, 110B, 110C | 계룡OEM | 엔지니어드스톤(벽, 상판)+후드(하츠_ISH-46S) +무선충전콘센트+수납장 | 4,060,000 |
| 광파오븐 | 전타입 | SK매직 | 스마트오븐(EON-B450M) | 490,000 |
| 냉장고/김치냉장고+냉장고장 빌트인 | 52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60,000 |
| | 68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240,000 |
| | 75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40,000 |
| | 76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8,450,000 |
| | 84A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70,000 |
| | 84B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70,000 |
| | 84C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70,000 |
| | 84D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70,000 |
| | 84E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8,450,000 |
| | 84F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370,000 |
| | 84G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900,000 |
| | 109A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670,000 |
| | 109B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430,000 |
| | 110A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290,000 |
| | 110B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290,000 |
| | 110C | LG | 냉장 : M662GBB352/김치 : Z332GBB151 | 7,290,000 |
| 인덕션(블랙3구) | 전타입 | 쿠첸 | 인덕션 3구(CEN-IF3A0NBA) | 500,000 |
| 침실 불박이장 (안방) | 68 | 계룡OEM | 안방 | 2,900,000 |
| | 75 | 계룡OEM | 안방 | 4,000,000 |
| | 76 | 계룡OEM | 안방 | 3,100,000 |
| | 84A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84B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84C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84D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84E | 계룡OEM | 안방 | 3,210,000 |
| | 84F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 | | |
|------------------|------|-------|-----|-----------|
| 침실 불밖이장 (침실1) | 84G | 계룡OEM | 안방 | 3,860,000 |
| | 109A | 계룡OEM | 안방 | 3,810,000 |
| | 109B | 계룡OEM | 안방 | 1,840,000 |
| | 110A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110B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110C | 계룡OEM | 안방 | 3,410,000 |
| | 52 | 계룡OEM | 침실1 | 1,760,000 |
| | 68 | 계룡OEM | 침실1 | 2,830,000 |
| | 75 | 계룡OEM | 침실1 | 1,240,000 |
| | 76 | 계룡OEM | 침실1 | 2,830,000 |
| | 84A | 계룡OEM | 침실1 | 3,250,000 |
| | 84B | 계룡OEM | 침실1 | 3,250,000 |
| | 84C | 계룡OEM | 침실1 | 3,250,000 |
| | 84D | 계룡OEM | 침실1 | 3,250,000 |
| | 84E | 계룡OEM | 침실1 | 2,830,000 |
| | 84F | 계룡OEM | 침실1 | 3,150,000 |
| | 84G | 계룡OEM | 침실1 | 960,000 |
| | 109A | 계룡OEM | 침실1 | 2,320,000 |
| | 109B | 계룡OEM | 침실1 | 4,350,000 |
| | 110A | 계룡OEM | 침실1 | 1,760,000 |
| | 110B | 계룡OEM | 침실1 | 1,760,000 |
| | 110C | 계룡OEM | 침실1 | 1,760,000 |
| 침실 불밖이장 (침실2) | 68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75 | 계룡OEM | 침실2 | 1,600,000 |
| | 76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A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B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C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D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E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84F | 계룡OEM | 침실2 | 2,900,000 |
| | 84G | 계룡OEM | 침실2 | 1,660,000 |
| | 109A | 계룡OEM | 침실2 | 1,760,000 |

| | | | | |
|-----------|--------|-------|--|-----------|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 109B | 계룡OEM | 침실2 | 1,770,000 |
| | 110A | 계룡OEM | 침실2 | 1,770,000 |
| | 110B | 계룡OEM | 침실2 | 1,770,000 |
| | 110C | 계룡OEM | 침실2 | 1,770,000 |
| 미세먼지안전복합창 | 52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2,910,000 |
| | 68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75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280,000 |
| | 76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A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B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C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D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E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F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40,000 |
| | 84G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370,000 |
| | 109A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460,000 |
| | 109B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100,000 |
| | 110A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5,130,000 |
| | 110B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5,130,000 |
| | 110C | 원가드 | 미세망적용 : 거실, 주방 그외: 안전방충망 적용 | 4,920,000 |
| 시스템에어컨 | 52 | LG | 거실 : R-W0720C2SP 침실1 : R-W0230C2SP | 5,090,000 |
| | 68(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870,000 |
| | 68(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8,760,000 |
| | 75(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5,040,000 |
| | 75(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220,000 |
| | 76(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5,390,000 |

| | | | | |
|--|---------|----|--|-----------|
| | 76(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500,000 |
| | 84A(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250,000 |
| | 84A(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070,000 |
| | 84B(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870,000 |
| | 84B(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010,000 |
| | 84C(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870,000 |
| | 84C(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010,000 |
| | 84D(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870,000 |
| | 84D(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9,010,000 |
| | 84E(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660,000 |
| | 84E(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8,910,000 |
| | 84F(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4,800,000 |
| | 84F(전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8,870,000 |
| | 84G(기본)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 5,130,000 |

| | | | | |
|--|----------|----|--|------------|
| | 84G(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8,890,000 |
| | 109A(기본) | LG | 거실 : R-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R-W0230C2SP | 7,480,000 |
| | 109A(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11,410,000 |
| | 109B(기본) | LG | 거실 : R-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R-W0230C2SP | 7,480,000 |
| | 109B(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11,410,000 |
| | 110A(기본) | LG | 거실 : R-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R-W0230C2SP | 7,320,000 |
| | 110A(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13,150,000 |
| | 110B(기본) | LG | 거실 : R-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R-W0230C2SP | 7,310,000 |
| | 110B(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침실2 : R-W0200C2SP | 13,130,000 |
| | 110C(기본) | LG | 거실 : R-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R-W0230C2SP | 7,260,000 |
| | 110C(전설) | LG | 거실 : R-W0720C2SP 주방 : R-W0320C2SP 안방 : R-W0230C2SP 침실1 : R-W0200C2SP | 13,150,000 |

| | | | | |
|--------|------|-------|-------------------|-----------|
| | | | 침실2 : R-W0200C2SP | |
| 무기질 도료 | 52 | 에스이에프 | 침실1 | 1,020,000 |
| | 68 | 에스이에프 | 안방,침실1,2 | 2,610,000 |
| | 75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190,000 |
| | 76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460,000 |
| | 84A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600,000 |
| | 84B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450,000 |
| | 84C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540,000 |
| | 84D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570,000 |
| | 84E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480,000 |
| | 84F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540,000 |
| | 84G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750,000 |
| | 109A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970,000 |
| | 109B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4,100,000 |
| | 110A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750,000 |
| | 110B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620,000 |
| | 110C | 에스이에프 | 안방,드레스룸,침실1,2 | 3,520,000 |
| 일체형 비데 | 공용욕실 | VOVO | TCB-7000(공용욕실) | 440,000 |
| 복합환풍기 | 공용 | 힙펠 | FHD-P150S1 | 650,000 |
| | 부부 | 힙펠 | FHD-P150S1 | 650,000 |

■ 유상 옵션 선택품목 납부일정(금액) 및 납부계좌

▶ 계약 및 납부일정 : 추후 고지

▶ 납부계좌

|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유상 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01-0319-0433-71 | 계룡건설산업(주) |

* 계약체결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 최초 옵션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여,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꾸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좁은 입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 옵션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추후 통지예정)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유상 옵션 선택품목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시공사와 별도로 체결할 유상 옵션 계약서 상의 납부일정에 맞추어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꾸밀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된 해당 실의 냉매배관은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능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화장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플러스 옵션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및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사항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제조사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공사의 이행 착수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주)에서 공급 및 시공하는 것으로서,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 및 시행위탁자 쥬지투글로벌과 관계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계약은 본 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조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 바라며,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주)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 옵션공사비(부가세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을 함께 전시하였으며,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와 관련된 옵션 선택시와 미선택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선택시 기타 선택을 우선 선택하여야 선택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시 확인 바랍니다.
- 옵션 계약 이후에는 추가, 변경, 취소 계약이 불가합니다.(단, 추가선택 옵션품목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본 공고의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VI

설계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2)]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2)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준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간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대지지분을 제외한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 등급) VII-0.157g임 |
| 견본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밸코니 확장세대 기준으로 84G타입의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임.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워크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냉장고, TV,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으며 (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식재, 경관연출 등)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차보도 포장, 식재, 시설물의 마감 재질, 디자인, 선형, 위치, 규모, 색채, 거리, 폭을 포함하여 주변환경과 부지 내 계획고 변경에 따른 고저차 등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84G타입) 외 견본주택 미건립 주택형(52,68,75,76,84A,84B,84C,84D,84E,84F,109A,109B,110A,110B,110C)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옵션의 형태 등은 견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공사 및 하자보수시 동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추가선택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시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추가선택 품목,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에서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등 포함), 벽 장식패널 마감, 디스플레이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견본주택은 발코니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크기, 위치 등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소방설비로 실제와 위치/개소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소방법에 따라 시공됨.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천장 환기구, 화장실 배기팬, 에어컨 매립배관, 난방분배기,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homme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환기구(DA), 부대시설 실외기 등은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의 설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공사 시 냉방전용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 추가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페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 사양은 동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 분양홍보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돋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을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음. 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회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사업계획 승인 조건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 기반시설은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외 기반시설과 연계 된 단지 내 동선(도로, 산책로 등)은 추후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폭, 선형 등이 변경 또는 삭제 될 수 있음.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로는 기반시설 도로로서 향후 인허가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폭, 길이, 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함. 단지외곽 보행자도로의 일부구간이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으로 인해 경사가 모형에 비해 가파를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 전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승강기 홀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높이,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옥상 난간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공용부 창호의 및 난간의 제작사 및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자 등을 실제 시공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
| 단지내부여건 | |

-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동 표시, 동 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체결 이후에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합침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을 포함한 본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 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주택 외관 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물외판(지붕, 옥탑, 전후면 외판,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주택 측벽 문양,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 측벽 로고의 위치 및 개소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각 동의 외창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는 주택의 주차장은 지하1,2층 205대 / 옥외3대(오피스텔 30대, 균린생활시설 35대 주차 포함)로 계획됨.
 - 본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동측 101동 및 103동 사이 주출입구, 남측 104동 전면부 인근 부출입구(비상차로) 각 1개소씩 계획 함.
 - 본 단지의 주택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출입구는 동측에 위치하며 인근 저층 세대는 진입램프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어려워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 단지내 주차장은 우기 등의 기상요건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 단지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구간에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 내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은 기둥과 간섭으로 운전석 및 보조석 승하차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지하출입구 편의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및 위치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펌프실, 저류조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 및 장비의 가동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3동, 104동 인근 지하에 전기실, 기계실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인근에 계연훼름/저류조 103동, 104동 인근에 저류조가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3동 지하에 지하주차장 훈룸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3, 104동 사이에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103동, 104동 인근에 단지 내 가스공급을 위한 LPG가스 저장탱크가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제주공항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02동, 103동 사이 지하에 관리사무소, 균린생활시설, 103동 지상1층 방재실 / 지상2층 MDF실, 104동 지상1층에 주민편의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 바다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해당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주차장과 주택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주차장에 설치(총19대(완속 18대, 급속 1대))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추후 달라질 수 있음.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단지배치 상 단위세대의 동·향·층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이 침해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또는 향후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 일조량의 감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현상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부대시설 실외기가 각 시설의 옥상 및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야간조명은 계약(예정)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것으로 실시공시 상이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에서는 단지내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도로, 필로티 및 저층 인접세대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시선간섭 등의 사생활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옥상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괴뢰침, 측격회, 중계기, 태양광설비, 옥상녹화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세대 및 각 동의 저층부 인접세대는 중앙광장,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등 오픈 스페이스 내 입주민에 의한 소음 및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생활자원보관소 4개소(101동과 102동 사이 측면(2개소), 103동 측면(1개소), 104동 전면(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세대 위치 및 주동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이동거리가 상이 할 수 있음. 시공 시 일부 규모,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생활자원보관소가 설치된 인근세대는 소음, 냄새, 분진,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기본시설(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위치는 유관기관의 인허가 협의를 통해 지정된 것으로 입주자의 민원으로 인한 변경은 불가함
-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D/A(설비환경기구), 탑라이트, 관리사무소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부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을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관련없는 사항으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석축 등의 구조물 범위와 마감재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관조명,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 출입구, 경비실 위치, 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시 단지 바닥마감, 창호형태, 난간종류, 조경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삿짐의 운반은 승강기를 통해 하여야 함.
-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임의사용에 의한 파손의 복구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따름)
- 승강기 사용 시 일부 시간대 및 이사 세대로 인한 혼잡 및 대기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음.
- 승강기의 속도, 인승, 설치수량은 각 동의 층수 및 세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기 바람.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용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용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설계상 부대복리시설은 주택 입주자들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시설별 해당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각 해당 입주민의 기타공용면적에 분배되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음.
- 본 주택은 사업승인 조건에 의해 중수도시설이 적용됨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에 중수를 이용한 양변기(절수 1등급, 4L)가 적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동별로 진입동선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단지 모형 및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각 동별 지상 진입동선이 상이함으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저층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주동 공용부 엘리베이터홀의 지하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 1층은 바닥-석재, 벽-도장 마감 기준, 기준층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으로 시공됨. 이는 동등 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을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내부 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비상차로구간은 비상차량(소방, 이삿짐 등)의 통행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부 비상차로 위치는 소방준공 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의 보행시 경사도에 따라 보행의 지장과 미끄러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계단 및 인도를 이용하여야 함
- 주민운동시설,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설비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도로와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용벽 및 석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인접한 침실의 경우 엘리베이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103동의 지붕층에 TV공청 안테나(1개소, 전파반향기준)와 지상 일부구간에 무선통신 안테나가 설치되며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설비 (지하1층 104동 PIT)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이는 소방법 및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접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하부 세대 중 상부 옥상에 면한 세대는 옥상배수로 인한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안방 발코니, 주방 발코니 또는 다용도실, 대피공간) 천장고는 단열재 설치로 견본주택 대비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 옥탑의 높이와 형태는 고도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됨.
-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CCTV는 기능과 감시 범위에 따라 수량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함. 단지내 설치되는 조경시설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음. 단지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단지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단지내 조경식재 구간 중 동의 일부 구간은 소방방상 비상시 공기안전메트가 설치되는 경우식재를 할수 없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안내함. 조경 식재계획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각 동 옥상층에는 옥상녹화가 일부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세대의 조망 제한 및 빛반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나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 옹벽 및 석축 등 단차구간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추후 인허가 관청의 의견, 미관 디자인,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단지내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법상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입주민 이용을 위한 간이 놀이시설을 설치함. 103동, 104동 사이 전면부 가스저장탱크가 설치 되어 일부 세대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음. 단지 경계부에 보안 및 안전을 위한 펜스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청의 의견, 디자인, 안전성,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공될 수 있음.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건립세대인 52,68,75,76,84A,84B,84C,84D,84E,84F,109A,109B,110A,110B,110C타입의 122세대는 건립세대 84G 타입과 마감재 및 색상 등이 동일하며, 평면형태 및 공간크기에 따라 일부 마감 및 가구 구성, 가구길이, 가구 색상의 조합, 유상옵션의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자료(분양 카탈로그 등)를 확인하시기 바람. 주택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거실 기준)이며,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등 부분은 상이할 수 있음. 본 주택은 개별난방 현장이며, 각 세대별 주방발코니 내 가스보일러가 설치됨.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본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형/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내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및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의 차단성능등급으로 추후 실제세대의 성능등급과 다를 수 있음.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시스템에어컨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용도실 내 세탁기 설치공간은 (52:가로 90.4cm, 세로 114cm, 68:가로 99cm, 세로 162cm, 75:가로100cm, 세로 155cm, 76:가로100cm, 세로160cm, 84A,84B,84C,84D:가로100cm 세로150cm, 84E:가로94cm 세로179cm, 84F:가로99cm 세로150cm, 84G:가로100cm 세로155cm, 109A:가로110cm 세로110cm 109B:가로100cm 세로144cm 110A,110B,110C : 가로100cm 세로144cm 규격으로 확보하여 해당 규격 이하의 세탁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일부 세탁기 용량에 따라 입주자가 다용도실 도어를 탈거 후 설치하여야 함.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인허가 과정 및 본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음.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본공사 시 다용도실/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욕실 출입문(부부/공용)은 본공사 시 PVC계통(ABS) 도어로 시공됨.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여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변색은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본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팁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가 설치되는 위치에는 실외기 외 성능에 방해가 되는 다른 어떠한 적재물이 없어야 함.
- 보일러가 설치되는 주방발코니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은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소방법에 근거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LPG 관련시설업체와 협의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납이 제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본공사 시 설비배관의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본공사 시 마루자재 및 세라믹타일,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의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 욕실, 주방 등 타일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웹덤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은 자재의 특성상 패턴, 색상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주방 벽, 욕실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페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품질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으로 시공되어 있는 경우 본공사 시 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나 패턴이 있을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 무관함.
- 본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타일/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포함,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가변형 벽체 선택 옵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코킹 두께 및 색상 등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화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화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화장시 화장부분의 외부샷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및 제조사는 내품암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 설치 장소는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의 피난시설로써 화재 등 비상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1층 세대 및 펠로티 상부세대의 경우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천장에 상부층 세대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 세대 환기유니트의 설치위치 및 환기디퓨저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 작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 내 양변기 후면부에는 중수도(양변기 세정용) 및 상수도(비데용)를 위한 앵글밸브가 각각 설치됨.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시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침실1(벽걸이형(액자형은 설치 불가))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과 추가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부대복리시설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치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승강기 및 기계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같은 주택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의 설치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음.
- 세대분전반 및 단자함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본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됨.
- 에어컨 실외기 전원은 단상(1Ø x 220V x 60Hz)이 공급되므로 입주 후 제품 선정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식탁용 매입 및 직부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견본주택의 각 평면은 옵션사항을 적용하여 시공하였음. 품목별 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 등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인덕션 용량은 3kW 기준으로 인프라를 구성하며, 입주자가 추후 3kW 이상의 제품으로 별도 설치할 경우 배선 및 배선기구의 변경은 입주자 부담임.
- 실외기실 천장에 세대 환기유니트가 설치되어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에 가스보일러 연도설치로 인한 천장 단차가 생길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서비스는 세대 내 입주민의 무선인터넷(고객 별도 설치) 사용시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 인터넷 미 사용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함.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기술개발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불가능할 수 있음.

| | |
|--------|---|
| | |
| 부대복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 형태, 창호의 크기 및 위치, 기능,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내외부 마감재, 집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을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임.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음.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VII 기타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 구분 | 적용여부 | 비고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
| |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호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천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미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
| | 조명설치(다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미적용 단지 내의 위생기구 2개 이상의 공용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감리회사 | 감리금액(원) | 비 고 |
|-------------|------------------|-----------------|--------|
| 건축 감리 | (주)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 1,056,047,000 | 부가세 별도 |
| 소방/전기/통신 감리 | (주)웅진엔지니어링 | ₩ 192,000,000 | 부가세 별도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01282022-101-0015500호 | 63,728,135,100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위탁자 (주)지투글로벌, 시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토지신탁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지투글로벌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주)지투글로벌 및 시공사인 계룡건설산업(주)가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 (주)지투글로벌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등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시, 시공사 교체 및 이에 수반되는 건축물 브랜드·명칭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
| 상호 | 대한토지신탁(주) | (주)지투글로벌 | 계룡건설산업(주)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13, 713호 (백석동, 성우아뜨리움오피스텔)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
| 법인등록번호 | 110111-1492513 | 161511-0253610 | 160111-0003121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한토지신탁(주)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1
- 사업방식 : 토지신탁사업 방식
- 토지(사업부지)의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제주시 주택과(승인번호 : 2018-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견본주택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793-3

■ 분양홈페이지 : <https://제주엘리프애월.com>

■ 분양문의 : ☎1533-2777

※ 본 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